



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한승연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5. 4. 15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한송연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4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 규정을 신설하여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의 신설 (안 제2조제3호)
- 나.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신설 (안 제4조제2항제6호)
- 다.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신설 (안 제7조제7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여성아동과
- 라. 입법예고 : 2024. 4. 4. ~ 4. 10.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 규정을 신설하고자 「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

항입

- 한부모가족 중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별도로 지원 규정을 신설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과 자립 능력이 취약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과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과도 입법체계를 같이하는 사항임
- 참고적으로 '25년 1월 기준, 우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 수는 6,121명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수급자 수는 37명임
- 조례안 제4조제6호의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내용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도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

☑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의3(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

2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

4.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

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4(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·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자립 지원의 신청,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제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
 - 조례안 제3조(시장의 책무)
 - 조례안 제7조(지원사업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기 사업 추진 중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또한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추계

4. 작성자

북지국 여성아동과장 배진위